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2. . . (제 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노선버스 대폐차시 저상버스로 도입하여야 하는 노선버스의 운행형태를 정하는 한편, 과태료 감경·가중 부과 시점을 명확히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저상버스 의무 도입(안 제14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에 따라 노선버스 대폐차시 저상버스를 의무 도입하여야 하는 버스 유형을 규정할 필요. 노선버스 중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를 저상버스 도입 의무대상으로 규정.

나. 과태료 감경·가중 부과(안 별표3)

과태료 감경·가중 부과하는 기산점을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으로 명확히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법 제14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형태”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버스운송사업 형태를 말한다.

별표 3 제1호나목1)나) 및 같은 목 2)가) 중 “최근”을 각각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최근”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3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4항의 개정규정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부터 나목 중 입석 없이 좌석만으로 구성된 버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저상버스 등의 운행 대수 등) ① ~ ③ (생 략) <u><신 설></u>	제14조(저상버스 등의 운행 대수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14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형태”란 「 <u>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u> 」 제3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버스운송사업 형태를 말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	
연 락 처	(044) 201 - 3870